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옴부즈퍼슨의 운영
및 활동 실태 파악”에 관한 출장 보고서**

2007. 2. 9 ~ 2. 14.

출장자: 선임연구위원 김 승 권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옴부즈퍼슨의 운영 및 활동 실태 파악”에 관한 출장 보고서

□ 가와사끼시 인권옴부즈퍼슨 사무국 방문과 옴부즈퍼슨 및 사무국관계
자와의 자문회의

— 사무국의 조직 및 인적 구성, 성격

- 사무국의 직원은 국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됨.
- 업무범위는 이지매(왕따), 부적절한 교사의 지도, 남녀평등, 가족, 성희롱 등을담당함
- 전화에 의한 접근으로 사무국의 업무가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4명의 전화상담원이 활동하고 있음(심리사, 복지사 등이며, 별정직으로 근무함)
- 재정은 전액 시 자체예산으로 부담하며, 연 약 7~8억이 소요됨

— 사무국의 활동

- 외국인을 위한 자료가 별도로 제작됨
- 전용전화가 개설되어 있음: 아동전화와 여성전화
- 전화상담의 약 80%가 아동에 의한 것이며, 이들은 옴부즈퍼슨에게 상담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화상담에 의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옴부즈퍼슨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함.

— 인권옴부즈퍼슨의 역할과 위상, 신분보장, 임금 등

- 2명의 여성 옴부즈퍼슨이 위촉되어 있으며, 1인은 현직 변화사이고, 1인은 전 가와사끼시의 아동상담소장을 역임한 전문상담원임
- 옴부즈의 권한은 행정적인 강제력이 없으므로 필요시 아동상담소와 긴밀하게 협력함
- 옴부즈의 역할은 권리침해의 신고를 받고, 조사하며 결과에 따라 조정 및 권고하는 기능임
- 옴부즈와 가와사끼시 아동권리위원회의 관계는 다소 모호한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

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음

- 타 기관의 협조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사립 학교는 협력 정도가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음
- 옴부즈퍼슨은 시장의 부속기관으로서 중앙정부나 현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한계를 가짐.
- 시장에게 2회 권고한 경험이 있으며, 하나는 집단따돌림과 체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상담소 상담원의 역할에 관련된 내용이었음.
- 전술한 권고 중 전자는 각급학교 교장협의체에서 계속 논의중에 있으며, 후자는 즉각 개선되었음
- ※ 가와사끼시에는 별도의 '시민옴부즈'가 있어 시민의 고충처리와 시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1990년대 설립)

—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 일본 전체 지자체 약 1800개 중 독립중 옴부즈퍼슨을 두고 있는 경우는 불과 3개 뿐이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현 시장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시장 개인의 적극적인 관심에 의하여 조례가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음.
-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선출직인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의 기조는 변함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렇지만 옴부즈퍼슨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직접 권리구제를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사안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에는 해당사건의 업무는 종료함.
- 2명이 풀타임 근무를 하지 않고 각각 주 4일 근무하고 있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짐.
- 현재 2명의 옴부즈퍼슨의 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월 70만엔)에 있어 봉급을 줄이고 옴부즈퍼슨을 증가시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원하고 있는 실정임
- ※ 다른 지자체의 옴부즈퍼슨의 임금은 월 25만엔 수준에 있음
- 옴부즈퍼슨의 역할이 개별구제 중심이 적절한지, 정책모니터링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았음. 특히, 이러한 논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에서 달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가와사끼시 아동권리위원회 방문 및 관계 공무원 자문회의

— 가와사끼시청 건강복지국 업무 브리핑

- 국장 및 해당 과장에 의한 업무 설명이 있었음
- 명칭에서 보여주듯이 아동권리위원회는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함.
- 따라서 아동권리 업무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임.

— 아동권리위원회 조례 제정의 배경과 세부 내용 협의

- 5국 13과가 협력하여 ‘조례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5개 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아동관련 부서에서만 참여한 것이 아님).
- 처음 조례제정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공평성과 중립성이 중요하였기 때문임.
- 당시 시민국에서는 인권조정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고, 외국인, 양성평등, 차별해소 등의 업무도 함께 맡고 있었기 때문임.

— 아동권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역할 및 기능

- 위원회의 성격은 시장의 부속기관 또는 자문기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되는 특성을 가짐.
- 따라서 시장에게 직접 보고토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상당히 존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많은 부분이 정책화되었음(100%는 아님).
- ※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조례에 의하여 존중토록 되어 있음.
-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와사끼시 행정체계 내에 존재하는 조직이며, 위원장은 대학교수로 비상근직이고, 위원들도 비상근직으로 임명되어 있음.

-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와사끼시 건강복지국 아동권리담당이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함.
- 위원회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타 부서와의 연계에 다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통합연계의 어려움 존재).
- 민간위원의 무리한 정책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이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실을 설명하는 등 민간위원과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음.

—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

-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아동상담소(hot line 포함)는 공공조직으로서 공무원이 근무하며, 아동학대를 직접 다룸
- 아동상담소의 직원은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상담자격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함.
- 아동학대, 피학대아동의 부모지원 등은 시의 아동복지부서에서 담당

□ 일본 아동권리전문가와 회의: 와세다대학교 및 나고야 대학교

— 일본아동권리전문가와 회의: 와세다대학교 기타 아키히토, 아라마끼 시게토, 나고야 사회사업대학교수

— 일본 중앙정부 아동정책의 핵심 및 지자체와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

- 중앙정부(후생노동성)는 아동정책에 대한 법을 제·개정하고, 지침을 결정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에서는 행동계획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의 책임을 지고 추진함.
-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절감하고 지자체 특성을 감안하여 아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신이 크게 작용한 것임.

— 일본의 주요 아동정책

- 주요 아동정책은 차세대육성계획, 아동긴급구제(아동보호)정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초중고 학교정책)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저출산대책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육정책, 아동양육 정책 등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 다시 일본사회의 문제점으로 재부각된 따돌림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아동긴급구체정책(아동보호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그렇지만 아동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는데, 특히 지방재정의 부실로 지자체가 통폐합(3200개->약 1800개)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은 일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도도부현과 시정촌간의 아동정책에 대한 강한 독립성은 아동권리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우려하여 학자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강력한 정책연계'를 강조하고 있음.

— 가와사끼시와 타 지자체간의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의 격차 원인

- 가와사끼시는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동권리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UN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할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가와사끼시가 이와 같이 훌륭한 아동정책을 펼치고 있는 근간에는 지자체장의 아동권리에 대한 마인드와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 즉, 가와사끼시는 아동권리 증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하나는 아동권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옴부즈 관련 조례임(세부 내용은 첨부 참조).
- 아동권리업무를 지자체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은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국가가 아동정책의 법과 정책을 설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의 아동권리보호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일본 학자들은 가지고 있었음.

참고자료:

[부록 1] 가와사끼市,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부록 2] 가와사끼시인권옴부즈퍼슨조례

[부록 1] 가와사끼市,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2000년12월21일·가와사끼市 조례제72호

전문

아동은 각자 각자가 하나의 인간이다. 아동은 매우 소중한 가치와 존엄을 지니고 있으며, 개성이나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자신이 그 자체로서 소중히 여겨지기를 원한다.

아동은 권리의 전면적인 주체이다. 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 확보, 차별금지, 의견존중 등 국제적인 원칙 하에 권리를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받는다. 아동에게 있어서 권리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자아실현하며,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동은 권리가 보장됨으로서 풍요로운 아동기를 보낼 수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해 학습하고, 실제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권리인식을 깊게 하고, 권리를 실현할 능력,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능력, 책임 등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존중되고 보장하여야 하며, 각각의 권리를 상호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은 어른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동반자이다. 아동은 현재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사회의 나아가야 할 길과 형성에 관하여 고유한 역할이 있음과 동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는 아동에게 열려야 한다.

아동은 동시대를 사는 지구시민으로서, 국내외의 아동과 상호이해·교류를 확대하고, 공생과 평화를 염원하며, 자연을 지키고, 도시의 보다 나은 환경을 창조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市の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은, 市の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삶을 영위케 하는 권리의 보장과 직결된다. 우리들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의 국제적인 원칙에 따르고, 아동 스스로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이에 우리들은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와 관련 시 등의 책무,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가정, 보육, 학교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장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용어들의 정의는 당해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른다.

- (1) 아동 : 시민을 비롯하여 시와 관계가 있는 18세 미만의 자, 기타 그들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2) 양육, 교육시설: 아동복지법(1947년 법률 제164호)에 규정한 아동복지시설,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 규정한 학교, 専修학교, 각종학교 기타의 시설 중, 아동이 양육되고, 배우기 위하여 마련된 모든 시설
- (3) 부모에 대신하는 보호자: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수양부모(里親) 또는 보호수탁자 기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자

제3조(책무)

1. 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시책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시민은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場에 있어서, 그 권리가 보장되도록 시와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3. 양육, 교육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및 직원(이하 [시설관계자] 라고 한다) 가운데, 시 이외의 시설관계자는 시의 시책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그 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양육하는 아동 및 고용된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시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가 등への 요청) 시는 아동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도록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市外에 있어서도 그 권리가 보장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제5조(가와사키 아동권리의 날)

1. 시민들 사이에 폭넓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하여, 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을 둔다.
2. 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은 11월20일로 한다.
3. 시는 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홍보) 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그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학습 등への 지원 등)

- ① 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학습 등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건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시는 시설관계자 및 의사, 보건의 등 아동의 권리의 보장과 직무상 관계된 자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이 있게 이루어지도록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③ 시는 아동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주적인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시민활동에의 지원) 시는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활동에 대하여 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과 함께,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의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제2장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제9조(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이 장에서 규정하는 권리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자라고 배우고 생활하는 데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10조(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아동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생명이 지켜지고 존중되는 것
- (2)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양육되는 것
- (3)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
- (4)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받지 않으며, 방치되지 않는 것
- (5) 건강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며, 성장에 어울리는 생활이 가능한 것
- (6)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제11조(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권리) 아동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개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인정되고, 인격이 존중되는 것
- (2) 자신의 생각이나 신앙을 유지하는 것
- (3)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는 것
- (4) 자신에 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수집되거나 이용되지 않는 것
- (5) 아동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취급을 받지 않는 것
- (6)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휴식하는 것, 여가를 가지는 것

제12조(자신을 지키고, 또한 지켜질 권리) 아동은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모든 권리의 침해로부터 벗어나는 것
- (2)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되는 것
- (3) 상황에 따른 적절한 상담의 기회, 상담에 어울리는 분위기가 확보되는 것
- (4) 자신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결정할 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는 것
- (5) 자신을 회복함에 있어서, 그 회복에 적절하고 어울리는 분위기가 주어지는 것

제13조(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권리) 아동은 그 성장에 따라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노는 것
- (2) 배우는 것
- (3)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
- (4) 정보를 얻는 것
- (5) 행복을 추구하는 것

제14조(스스로 결정할 권리) 아동은 자신에 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자신에 관한 것을 연령과 성숙도에 맞게 결정하는 것
- (2) 자신에 관한 것을 결정할 때에, 적절한 지원 및 조언을 받는 것

- (3) 자신에 관한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제15조(참여할 권리) 아동은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자신을 표현하는 것
- (2)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는 것
- (3) 동료들 만들고, 동료와 모이는 것
- (4) 참여를 할 때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

제16조(개별적인 필요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 아동은 그 처한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있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아동 또는 그 가족의 국적,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기타의 처한 상황을 원인 또는 이유로 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 (2) 전향의 처한 상황의 차이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가운데에 공생할 수 있는 것
- (3) 장애가 있는 아동이 존엄을 가지고, 자립하며, 사회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는 것
- (4) 국적, 민족, 언어 등에 있어서 소수의 입장에 있는 아동이 자신의 문화 등을 향유하고, 학습하며, 표현하는 것이 존중되는 것
- (5)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의 입수 방법, 의견표명의 방법, 참여의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및 배려가 주어지는 것

제3장 가정, 양육, 교육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1절 가정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

제17조(부모 등에 의한 아동의 권리보장)

- 1.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이하 [부모 등] 이라 한다)는, 그 양육하는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자이다.
- 2. 부모 등은 그 양육하는 아동이 권리를 행사할 때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부모 등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그 양육하는 아동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4. 부모 등은 양육, 학교시설 및 보건, 의료, 아동복지 등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동 본인의 정보를 얻는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양육의 지원)

- 1. 부모 등은 그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 시는 부모 등이 그 아동의 양육에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특히 배려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안심하고 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9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부모 등은 그 양육하는 아동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학대로부터의 구제 및 회복)

1. 시는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구제 및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전항의 구제 및 그 회복에 있어서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아동의 심신상황을 특히 배려하여야 한다.
3. 시는 학대의 조기발견 및 학대 받은 아동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회복을 위하여 관계단체 등과 연계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양육, 교육 시설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

제21조(양육, 교육환경의 정비 등)

1. 양육, 교육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설치관리자]라 한다)는 그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도모되도록, 양육, 교육시설에 있어서 아동이 충분히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2. 전항의 환경정비에 있어서는 그 아동의 부모 등을 비롯한 지역의 주민과 연계를 도모함과 함께, 양육, 교육시설의 직원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체제의 정비 등)

1. 시설설치관리자는 양육, 교육시설의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부모 등 지역의 주민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안전관리의 체제 정비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시설설치관리자는 아동의 자주적인 활동이 안전 속에 보장되도록 그 시설 및 설비의 정비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제23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등)

1. 시설관계자는 그 아동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상담을, 그 아동이 안심하고 행할 수 있도록 양육, 교육시설의 체제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시설설치관리자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에 관한 상담을 그 아동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양육, 교육시설에 있어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4. 시설설치관리자는 학대 및 체벌에 관한 아동의 상담을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아동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집단따돌림의 방지 등)

1. 시설관계자는 집단따돌림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시설관계자는 집단따돌림의 방지를 위해, 아동들을 상대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계발에 노력해야 한다.

3.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집단따돌림의 방지에 관한 연수 등의 실시에 노력해야 한다.
4. 시설설치관리자는 집단따돌림에 관한 상담을 그 아동이 안심하고 행할 수 있는 양육, 학교시설에 있어서의 체제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시설관계자는 집단따돌림에 관한 아동의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자,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아동의 구제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관계자는 집단따돌림을 행한 아동에 대하여도 필요한 배려를 하는 바탕 위에서 적절한 대응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아동 본인에 관한 문서 등)

1. 양육, 교육시설에 있어서 아동 본인에 관한 문서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전항의 문서 중 아동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작성에 있어서 아동 본인 또는 그 부모 등의 의견을 구하는 등 공정한 문서의 작성에 대한 배려가 행해져야 한다.
3. 양육, 교육시설에 있어서는,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아동 본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4. 전항의 정보는 양육, 학교 시설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5. 제1항의 문서 및 제3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아동 본인에게 제시되거나 제공되도록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양육, 학교 시설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에, 그 아동 본인으로부터 사정, 의견 등을 청취하는 등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3절 지역에 있어서의 아동의 권리보장

제26조(아동의 성장의 장 등으로서의 지역)

1. 지역은 아동의 성장의 장이고, 가정, 양육, 교육시설, 문화, 스포츠 시설 등과 일체가 되어 그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곳임을 고려하여, 시는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장이 도모되도록 또한 아동의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 및 교육환경의 향상을 위한 지역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2. 시는 지역의 아동, 그 부모 등 시설관계자, 그 외 다른 주민 각자 각자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양육, 교육환경에 관한 협의, 그 외 활동을 하는 조직의 정비 및 활동에 대한 지원에 노력한다.

제27조(아동 고유의 공간)

1. 아동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인 것, 휴식하며 자신을 되찾는 것, 자유롭게 놀고 활동하는 것, 안심하고 인간관계의 형성이 가능한 장소(이하 아동 고유의 공간이라 한다)가 중요함을 고려하여, 시는 아동 고유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아동 고유의 공간 확

보 및 그 존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시는 아동 고유의 공간 제공 등의 자주적인 활동을 행하는 시민 및 관계단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그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28조(지역에 있어서의 아동의 활동)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활동은, 아동이 풍요로운 인간 관계 속에서 자라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여, 시는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자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장 아동의 참여

제29조(아동의 참여 촉진) 시는 아동의 시정 등에 대하여 시민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양육·교육 시설 기타 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과, 그 운영 등에 대하여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또는 지역에 있어서 문화,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모든 시책에 있어서 보장하는 것이 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여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 방법의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제30조(아동 회의)

1. 시장은 시정에 대하여, 아동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아동회의(이하 [아동회의] 라 한다)를 개최한다.
2. 아동회의는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한다.
3. 아동회의는 그 주체인 아동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아동의 종합 의견 등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등을 존중해야 한다.
5.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아동회의에 모든 아동의 참여가 촉진되고, 그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행한다.

제31조(참여활동의 거점 만들기) 시는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들만이 자유롭고 안심하며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자치적 활동의 장려)

1.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아동의 자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자치적인 활동에 의한 아동의 의견 등은 양육, 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보다 열린 양육, 학교시설) 시설설치관리자는 아동, 부모, 기타 지역주민에게 보다 열린 양육,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양육, 학교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을 행하고, 그들 및 양육, 교육시설의 직원들과 함께 양육, 학교시설을 강화하고 상호 조화되기 위하여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4조(시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아동의 의견) 시는 아동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시

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아동의 참여 방법 등에 대하여 배려하고,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상담 및 구제

제35조(상담 및 구제)

- ① 아동은 가와사키市 인권옴부즈맨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의 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는 가와사키市 인권옴부즈맨에 의한 것 외에도, 아동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또는 구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과 연계를 도모하고, 아동 및 그 권리의 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

제36조(행동계획)

- ① 시는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할 때에 아동의 권리보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가와사키市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 이라 한다)을 책정한다.
-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행동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시민 및 제38조에 규정한 ‘가와사키市 아동 권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7조(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의 아동에 관한 시책은 아동의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배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1)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초를 둔 것
- (2) 교육, 복지의료 등과의 연계 및 조정이 도모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것
- (3) 부모 등, 시설관계자, 기타 시민과의 연계를 통하여 하나하나의 아동을 지원하는 것

제7장 아동의 권리보장 상황의 검증

제38조(권리위원회)

1.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와사키市 아동권리위원회(이하 [권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권리위원회는 제36조 제2항에 정한 것 외에, 시장 기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아동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의 아동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3. 권리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은 인권, 교육, 복지 등 아동의 권리에 관계된 분야에 있어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7. 제4항의 위원 외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위원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8. 위원 및 임시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같다.
9. 앞서 각항에서 정한 것 외에, 권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9조(검증)

1. 권리위원회는 전조 제2항의 자문이 있는 때에는, 시장 기타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자문에 관련된 시책에 대해 평가 등을 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한다.
2.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를 권리위원회에 보고한다.
3.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4.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구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얻어지도록 그 방법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5. 권리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상황에 대하여 조사, 심의한다.
6.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심의에 의하여 얻어진 검증결과를 시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답신한다.

제40조(답신 등에 대한 조치 등)

- ①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권리위원회로부터의 답신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② 시장은 전조규정에 의한 답신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공표한다.

제8장 잡칙

제41조(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기타 집행기관이 정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조례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권리침해로부터의 구제 등을 위한 체제정비)
2. 시는 아동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드러나기 어렵고, 인식되기 힘들다는 점을 포함, 아동의 심신이 장애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입을 것을 고려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상담하는,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대 등의 예방, 권리침해로부터의 구제 및 회복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체제를 시급히 정비한다.

부칙

이 조례의 시행기일은 시장이 정한다.

[부록 2] 가와사끼시인권옴부즈퍼슨조례
2001년 6월 29일·가와사끼시조례 제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설치) 시민이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신청을 용이하고 또한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고, 시민의 이해와 상호 협조 하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인권침해로부터의 구제를 도모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만들기에 공헌할 목적으로 본 시에 가와사끼시인권옴부즈퍼슨(이하, 인권옴부즈퍼슨이라 함)을 둔다.

제2조(관할)

1. 인권옴부즈퍼슨의 관할은 다음의 인권의 침해(이하, 인권침해라 함)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1) 아동(가와사끼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2000년 가와사끼시 조례제72호)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함)의 권리 침해
 - (2) 남녀평등에 관한 인권의 침해(남녀평등가와사끼시조례(2001년 가와사끼시조례 제14호) 제6조에서 규정한 남녀평등에 관한 인권의 침해를 말함)
2.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권옴부즈퍼슨의 관할로 보지 않는다.
 - (1) 판결, 재결 등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2) 의회에 청원 및 진정을 하고 있는 사항
 - (3) 가와사끼시민옴부즈맨(이하, 시민옴부즈맨이라 함)에게 고충처리를 신청한 사항.
 - (4) 인권옴부즈퍼슨 또는 시민옴부즈퍼슨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3조(인권옴부즈퍼슨의 직무) 인권옴부즈퍼슨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조언 및 지원을 수행할 것.
- (2)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신청 및 자기발의에 근거하여 조사, 조정, 권고, 시정요청 등을 수행할 것.
- (3)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것.
- (4)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을 공표할 것.
- (5) 인권에 관한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공표할 것.

제2장 책무

제4조(인권옴부즈퍼슨의 책무)

1. 인권옴부즈퍼슨은 시민의 인권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인권옴부즈퍼슨은 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옴부즈맨 그 외 시의 기관,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서로간의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인권옴부즈퍼슨은 상담 및 구제신청을 행한 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상담 및 구제신청에 관련한 사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인권옴부즈퍼슨은 그 지위를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시 기관의 책무)

1. 시의 기관은 인권옴부즈퍼슨의 책무 수행에 관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시의 기관은 인권옴부즈퍼슨의 책무 수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옴부즈퍼슨의 직무수행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옴부즈퍼슨의 직무수행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옴부즈퍼슨의 조직 등

제8조(인권옴부즈퍼슨의 조직 등)

1. 인권옴부즈퍼슨의 정수는 2인으로 하고, 그 중의 1인을 대표 인권옴부즈퍼슨으로 한다.
2. 인권옴부즈퍼슨은 인격이 고결하고, 사회적인 신망이 두텁고, 인권문제에 관한 우수한 식견을 지닌 자 중에서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인권옴부즈퍼슨의 관할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3. 인권옴부즈퍼슨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기에 한해 재임이 가능하다.
4. 인권옴부즈퍼슨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제9조(비밀을 준수할 책무) 인권옴부즈퍼슨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을 마친 후에도 같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인권옴부즈퍼슨이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수행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직무상의 의무위반 그 외 인권옴부즈퍼슨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비행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겸직 등의 금지)

1. 인권옴부즈퍼슨은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원 또는 장 및 정당 그 외의 정치단체의 임원과 겸할 수 없다.
2. 인권옴부즈퍼슨은 본시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그 외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3. 인권옴부즈퍼슨은 전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공평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장 상담 및 구제

제1절 상담

제12조(상담)

1. 누구든지, 시민 등(시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 근무하는 자 또는 재학하는 자 이 외 시와 관계가 있는 자로서 규칙에서 정한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은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인권옴부즈퍼슨에게 상담할 수 있다.
2. 인권옴부즈퍼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언 및 지원을 행한다.

제2절 구제신청

제13조(구제신청)

1. 시민 등은 스스로가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때는 인권옴부즈퍼슨에게 구제신청(이하, '신청'이라고 함)을 할 수 있다.
2. 신청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 해야 한다. 단지, 서면에 의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 (1)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
 -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그 사실이 있었던 년, 월, 일
 - (3) 그 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14조(본인 이외의 자의 신청)

1. 누구든지, 시민 등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당해 시민 등을 대신해서 인권옴부즈퍼슨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2. 신청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 해야 한다. 단지, 서면에 의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 (1)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 그 외의 단체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주소지 및 대표자의 이름)
 - (2)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시민 등의 이름 및 주소
 -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그 사실이 있었던 년, 월, 일
 - (4) 그 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3절 조사의 실시 등

제15조(신청과 관련된 조사 등)

1. 인권옴부즈퍼슨은 신청이 있는 경우는 당해 신청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신청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동조 제2항 제2호의 시민 등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1)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
 -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은 후 3년이 경과된 때. 단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
 - (3) 허위 그 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4)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시 이외의 구역에서 발생했을 때. 단지 인권옴부즈퍼슨이 특히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제외.
 - (5) 전항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단지, 인권옴부즈퍼슨이 특히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제외.
4. 인권옴부즈퍼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첨부해서 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함)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6조(발의 조사)

1. 인권옴부즈퍼슨은 시민 등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자기 발의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지, 인권옴부즈퍼슨이 특히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제17조(조사의 중지 등)

1. 인권옴부즈퍼슨은 조사를 개시한 후에 있어서도,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조사를 중지하고 또한 중단할 수 있다.
2. 인권옴부즈퍼슨은 조사를 중지하고 중단할 때는 그 취지와 이유를 첨부해서 신청인 또는 제15조 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동의를 얻은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절 시의 기관에 대한 조사 등

제18조(시의 기관에 대한 조사)

1. 인권옴부즈퍼슨은 시의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되는 시의 기관에 대해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2. 인권옴부즈퍼슨은 조사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되는 시의 기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장부, 서류 그 외의 기록을 열람하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고 또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인권옴부즈퍼슨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전문적 기관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인권옴부즈퍼슨은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청인 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단지, 다음 조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제19조(시의 기관에 대한 권고 등)

1. 인권옴부즈퍼슨은 조사의 결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하는 시의 기관에

대해 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인권옴부즈퍼슨은 조사의 결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하는 시의 기관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표명을 받은 시의 기관은 당해 권고 및 의견표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인권옴부즈퍼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한 경우에는 시의 기관에 대해 시정 등의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요구받은 시의 기관은 당해 보고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권옴부즈퍼슨에게 시정 등의 조치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
6. 인권옴부즈퍼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표명을 한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가 있었던 경우는 그 취지를 신청인 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인권옴부즈퍼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표명의 내용을 공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내용에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제20조(시민 옴부즈맨과의 공동권고 등) 인권옴부즈퍼슨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표명을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민옴부즈맨에 대해 공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시의 기관 이외의 것에 대한 조사 등

제21조(시의 기관 이외의 것에 대한 조사 등)

1. 인권옴부즈퍼슨은 조사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시의 기관 이외의 것에 한정한다.)에 대해 질문하고, 사정을 청취하고, 또는 실지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3. 인권옴부즈퍼슨은 조사의 결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한 알선 그 외의 조정(이하, '조정'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
4. 인권옴부즈퍼슨은 조사 또는 조정의 결과에 대해서 신청인 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사업자에 대한 요청 등)

1. 인권옴부즈퍼슨은 조사 또는 조정의 결과, 사업 활동에 있어서 빈번한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해서 시정,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인권옴부즈퍼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 그 취지를 공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를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인권옴부즈퍼슨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공표에 관련한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6절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2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9조 제7항 및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대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절 인권에 관한 과제에 대한 의견공표

제24조(인권에 관한 과제에 대한 의견공표) 인권옴부즈퍼슨은 그 직무수행을 통해서 밝혀진 인권에 관한 사회구조상의 과제에 대해서, 지역의 해결을 향한 노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사무국)

1. 인권옴부즈퍼슨의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가와사끼시 시민옴부즈맨 조례(1990년 가와사끼시 조례 제22호)제21조에서 규정한 사무국에서 처리한다.
2. 인권옴부즈퍼슨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전문조사원을 두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등) 인권옴부즈퍼슨은 매년 이 조례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시장 및 의회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이것을 공표한다.

제27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